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20가합5775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지원

피고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

변론 종결2021. 11. 25.

판결 선고2022. 1. 13.

주 문

1.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0. 7. 10. 체결된 각 주식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F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위 각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G 주식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19. 8.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.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를 하여, 2020. 7. 1. 'E은 원고에게 1,649,383,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1. 10.부터 2020. 7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(위 법원 2019가합1957 판결)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E은 F 주식회사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발행주식 100만 주 중 보통주 23만 주(1주의 액면가액 5,000원)를 보유하고 있었는데, 2020. 7. 10. 피고들과, E이 보유한 위 23만 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취지의 주식양도계약[105,800주를 5억 원에 피고 B에게, 각 62,100주(합계 124,200주)를 각 3억 원(합계 6억 원)에 피고 C과 피고 D에게 양도하는 취지로, 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]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 C은 E의 조카이고, E의 배우자는 H인데, 피고 B은 H의 사촌동생이며, 피고 D는 H의 조카이다.

라. 이 사건 회사는 2010. 12. 14. 설립되었는데, 이 사건 계약 당시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였다.

마.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, E이 보유한 재산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(이하 해당 재산을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번호에 따라 '위 4번 토지' 등으로 지칭한다).

1 이 사건 회사 주식23만 주	
2 오산시 I임야 1,048m ²	각 2020. 7. 3. 피고 C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
3 서산시 J임야 1,297m ²	
4 서산시 L임야 496m ²	
5 평택시 M오스카빌 N호	2016. 8. 26. (주)○근저당권(채권최고액 3억 4,440만 원)
6 주식회사 P 주식46,840주	
7	

1 이 사건 회사 주식 23만 주	
8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 내지 5, 10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이 사건의 쟁점

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E이 주식회사 P(이하 'P'이라 한다) 주식 78.07%(46,840주)를 보유하고 있었는데, P이 보유한 서산시 소재 토지 7필지의 가치와 그 장래의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면, E이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. 그러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E이 무자력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.1)

나. 쟁점에 관한 판단

1) 다툼 없는 사실 E이 보유한 재산 중 다음 재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사실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.2)

위 1번 주식 이 사건 회사 주식 23만 주	1,150,000,000원
위 2번 토지 오산시 I 임야 1,048m ²	0원
위 3번 토지 서산시 J 임야 1,297m ² 위 4번 토지 서산시 L 임야 496m ²	(169,023,999원)3) 음수를 의미한다. 이하 괄호 표시한 금액도 마찬가지이다.
위 5번 주택 평택시 M오스카빌 N호	75,600,000원
위 7번 채무 E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	(1,489,321,960원)
소계	(432,745,959원)

2)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) E의 원고에 대한 전부금 채무가 1,707,360,52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나)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매사건(Q)에서 위 3, 4번 토지 인근의 서산시 R 임야 348m², S 임야 576m²와 서산시 T 임야 1,899m²에 관하여, 2021. 1. 29.을 기준시점으로 한 위 3필지 전체의 가치가 699,786,000원(m²당 단가는 216,000원 내지 254,000원)이라는 취지의 감정평가가

이루어졌다.

다) 한편 감정평가사 U은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21. 8. 25. 기준시점을 2021. 8. 18.로 하여 P이 소유한 서산시 V 임야 586m², W 임야 301m², X 임야 99m², 서산시 Y 임야 6,819m², Z 임야 5,659m², AA 임야 1,843m², 서산시 AB 임야 600m² 등 7필지(이하 '이 사건 7필지'라 한다)의 시가가 5,740,475,000원이라는 취지로 감정평가하였다. 위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로 서산시 AC 대 1,833m²를 선정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단가를 산정하고, 서산시 AD 대 1,403m²에 대한 매매가격을 비교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출된 토지단가를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.

라) 위 V, W, X 토지와 위 Y, Z, AA 토지 등 6 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, AE조합이 2015. 4. 1. 채권최고액 14억 3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, 피고 B이 2017. 7. 5.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, AF 등 13명이 채권최고액 14억 5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.

마) 위 AB 토지에는 2018. 11. 2. AG조합이 채권최고액 1억 9,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바) 대한민국(처분청 동수원세무서장)은 2020. 8. 14.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위 V, W 토지를 압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18호증,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3)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

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소극재산은 2,140,106,482원(=432,745,949원 +

1,707,360,523원)인 점, ② 이 사건 7필지에, 그 인근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전지방법원

서산지원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에서 적용된 가장 고가의 토지단가(m²당 254,000원)를

적용하더라도, 그 가치가 약 40억 원4) 인데, 그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

40억 7,500만 원(=14억 3,000만 원+10억 원+14억 5,000만 원+1억 9,500만 원)에 이르는 점, ③

P은 이 사건 계약 무렵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계약 당시 E이 적극재산이

소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(P이 보유한 토지들의 가치에

관하여 피고가 감정평가사 U에게 의뢰한 감정평가는, 이 사건 7필지가 '임야'임에도 비교표준지로

'대지'를 선정한 점, 검증을 위하여 선정한 주변 토지의 매매 거래사례도 그 토지의 위치와 크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7필지에 관한 거래사례로 참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따라서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임기환

판사이용희

판사배다현

별지

- 1) 그 밖의 사해행위 요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.
- 2) 피고의 2021. 9. 15.자 준비서면 및 원고의 2021. 10. 22.자 준비서면 각 참조, 다만 원고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, '위 재산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E이 무자력임이 명백하다'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.
- 3) 음수를 의미한다. 이하 괄호 표시한 금액도 마찬가지이다.
- 4) $4,040,378,000\text{원} = (586 + 301 + 99 + 6,819 + 5,659 + 1,843 + 600) \times 254,000/\text{m}^2$